

##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 11. 12	규칙 제 757호
개정	2003. 12. 23	규칙 제 828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 3. 28	규칙 제 899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4. 15	규칙 제1009호(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2. 11. 5	규칙 제1046호
일부개정	2018. 4. 4	규칙 제1181호(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9. 4	규칙 제119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2. 11. 5, 2018. 4. 4>

1.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1회
2. 우수공무원 표창: 연 1회
3. 선행공무원 표창: 분기 1회
4.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장: 연 1회
5. 모범통·반장 표창: 격월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 4. 4>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
5.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제3조(포상대상자의 상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상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2011. 4. 15>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표창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결정하기 위

하여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개정 2007. 3.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4급 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 3. 28, 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7. 3. 28, 개정 2010. 12. 15>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3, 2007. 3. 28>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표창업무지침에 준한 공·사생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자료의 검토) 총무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 받은 경우에 제5조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제8조(포상방법 등)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명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매월 1만원”을 “매월 3만원”으로 한다.

#### 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2007. 3. 28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4항 중 “포상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⑰ 부터 ④④ 까지 생략

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5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규칙 제1181호,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모범공무원 표창: 연 1회”를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1회”로 한다.

제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 또는 주소  
(직) 성명

( 표 창 문 )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별지 제2호 서식]

감 사 장

소속 또는 주소  
(직) 성명

( 감 사 문 )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소속 또는 주소  
(직) 성명

( 상 문 )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 상	비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